

현금 IC 카드 가맹점 잔돈적립서비스 특약서

1) 개정시행(예정)일: 2023.07.31

2) 개정내용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 1 조(목적)~제 2 조(용어의 정의)<생 략></p> <p>제 3 조(적용범위 및 잔돈적립한도)</p> <p>①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 후 발생한 잔돈적립에 한한다.</p> <p>② 현금카드 수록계좌당 잔돈적립한도는 1 회 <u>1만원</u>, 1 일 10 만원으로 하며, 동 한도가 변경될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 사전에 별도로 통보한다.</p> <p>제 4 조(가맹점 준수사항)~제 14 조(관할법원)<생 략></p>	<p>제 1 조(목적)~제 2 조(용어의 정의)<좌 동></p> <p>제 3 조(적용범위 및 잔돈적립한도)</p> <p>① 본 특약의 적용범위는 가맹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결제 후 발생한 잔돈적립에 한한다.</p> <p>② 현금카드 수록계좌당 잔돈적립한도는 1 회 <u>5만원</u>, 1 일 10 만원으로 하며, 동 한도가 변경될 경우 은행은 가맹점에 사전에 별도로 통보한다.</p> <p>제 4 조(가맹점 준수사항)~제 14 조(관할법원)<좌 동></p>	<p>금융결제원 스마트금융공동 업무규약 시행세칙 개정 따른 약관 변경</p>

3)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